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 | |
|------------|-----|
| 의 안 번 호 | 259 |
|------------|-----|

2022년 12월 19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이상훈 의원 외 10명

나.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2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훈 의원)

가. 제안이유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아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의 인프라 및 정비업자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부족함
-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정비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함
-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동차 정비산업”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 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27. ~ 2022. 10. 3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원안가결 동의

- 본격적인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여 기존 내연기관차 위주의 안전 및 정비 체계를 친환경 모빌리티에 맞게 전환해 나가야 하며 정비교육을 통해 기술인력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함
-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등의 법적근거로 조례 제정에 동의함

1) 택시정책과-54236(2022.12.7.)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전기·수소 자동차에 비해 부족한 정비 인프라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및 검사·정비시설 확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관련

- 국토부 자료²⁾에 따르면 '22년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5,355천대 중 5.8%(1,477천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6년 1.1%(244천대)에 비해 친환경 차량의 비중이 4.7%나 늘어나는 등 친환경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국토부 자료,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35만대... 전기차 30만대 돌파(2022.10.28.)

- 친환경차 등록 추이

(단위 : 대, %)

| 구분 | '16말 | '17말 | '18말 | '19말 | '20말 | '21.6월 | '21말 | '22.9월 |
|-----------------|------------|------------|------------|------------|------------|------------|-------------------|-------------------|
| 전체자동차 | 21,803,351 | 22,528,295 | 23,202,555 | 23,677,366 | 24,365,979 | 24,642,251 | 24,911,101 | 25,355,938 |
| 하이브리드 | 233,216 | 313,856 | 405,084 | 506,047 | 674,461 | 785,143 | 908,240 | 1,103,642 |
| 전기차 | 10,855 | 25,108 | 55,756 | 89,918 | 134,962 | 173,147 | 231,443 | 347,395 |
| 수소차 | 87 | 170 | 893 | 5,083 | 10,906 | 15,225 | 19,404 | 26,719 |
| 친환경차 | 244,158 | 339,134 | 461,733 | 601,048 | 820,329 | 973,515 | 1,159,087 | 1,477,756 |
| 친환경차 등록비중(%) | 1.1 | 1.5 | 2.0 | 2.5 | 3.4 | 3.9 | 4.7 | 5.8 |

- 다만, 늘어나는 친환경 차량에 비해 이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시설은 열악한 현실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 정비업체 3만 6,454개 중에서는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약 220개소 (4.3%)에 불과한 실정임³⁾
- 또한, 정비인력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기 부품을 탑재하고 있어 전기차 정비에는 배터리 등 전장부품⁴⁾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실정이나 이러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은 물론 반복적인 정비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어려운 실정임
- 그간 서울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⁵⁾를 '16년 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나 늘어난 친환경 차량의 정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던 바,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정하고 기본계획 및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3) 보도자료 ,전기차 30만시대 ... 인프라는 열악(충청타임즈, 2022.10.19.)

4) 전장부품 = 전기장치부품의 약어

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관련(안 제1조~제2조)

- 안 제1조(목적)와 안 제2조(정의)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용어를 법령에 따른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임
- 다만, 동 제정조례안에서 언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중 “자동차정비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 해석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유사 조례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산업”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⁶⁾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2조(정의)에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자동차정비산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기기·시설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시장 및 자동차정비업자의 책무,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련(안 제 3조~제4조)

- 안 제3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기반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자동차정비업자의 협력사항 등을 명시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협력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 할 것임
- 안 제4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동 제정안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안 제5조)

- 안 제5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자원마련 등 세부적인 내용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장기적인 추진 방향을 수립·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기본계획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 등이 수립하는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 7),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8)과 연계하도록 서울시 자동차 정책 및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관련(안 제6조~제7조)

- 안 제6조는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안 제7조는 안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7)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2.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기반조성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의2.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동차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정비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회⁹⁾를 개최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친환경 자동차에 따른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현재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상당 부분이 국비지원¹⁰⁾으로 이루어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국가가 아닌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은 필요할 것임
- 아울러, 현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는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¹¹⁾이 발의되었으나

9)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따른 정비와 유지관리 방안 토론회

- 개최일시 : 2022. 10. 21.(금) 15:00~17:00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 주 최: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상훈 의원

10)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올해 전기차 2만7천대 보급… 상반기 14,166대 보조금 신청접수」('22.2.15)

-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900만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지원**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 이장섭 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 2111228 - 제안일: '21.6.30 - 회의결과 : 소위원회

- 주요내용

(중략)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설치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자동차 정비는 정비대가가 따르는 수익활동”이라는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¹²⁾함에 따라 관련 법안이 계류중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협력체계 구축 관련(안 제8조)

- 안 제8조는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자동차 전문연구원 뿐만 아니라 학계, 자동차검사정비조합 등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12)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1.12) - 검토의견

가) 국토교통부

전기자동차 보급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점검·정비작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동차 정비는 정비대가가 따르는 수익사업으로 별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나) 기획재정부

자동차 정비는 정비대가가 따르는 수익사업으로 재정지원 불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발전과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

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방향과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6.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7.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8.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경영안전진단, 개선을 위한 상담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 개선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검사·정비 기반시설 구축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